

# 영어강좌 운영에 관한 지침

시행일 : 2024.03.01.

제1조(목적) 본 지침은 학부 및 일반대학원의 영어강좌 운영 및 수업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영어강좌는 “전체영어강좌”와 “부분영어강좌”로 구분한다.

- ① “전체영어강좌”란 정규학기 학위과정에서 수업 전체를 영어로 진행하는 강좌를 의미한다.
- ② “부분영어강좌”란 정규학기 학위과정에서 수업시간의 일부를 영어로 진행하는 강좌를 의미한다.

제3조(강좌 개설) ① 전체 및 부분영어강좌를 진행하려는 교강사는 강좌편성 시 강좌 개설 대학(원) 행정실에 통보한다.

- ② 학부 전체영어강좌의 개설기준은 7명 이상으로 한다.
- ③ 학부 부분영어강좌는 학부 교과목 개설기준을 따른다.
- ④ 2항에도 불구하고, 학부 전체영어강좌 중 교양과목의 영어학습 관련 강좌, 실기강좌는 학부 교과목 개설기준을 따른다.
- ⑤ 일반대학원 영어강좌의 개설기준은 3명 이상으로 한다.

제4조(성적평가 방법) 제2조1항에서 정한 학부 전체영어강좌는 상대평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5조(수업보조금 지원) ① 제2조1항에서 정한 전체영어강좌만 본조항 2항에 의거해 수업보조금을 지원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강좌는 수업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.

1. 일반대학원 개설 강좌
  2. 영어 관련 전공(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/응용영어통번역학과, 외국어대학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등)에서 개설한 강좌
  3. 개인레슨으로 수업이 진행 되는 강좌
  4. 외국국적 소지자가 담당하는 강좌
  5. 영어 회화 및 청취 관련 강좌
  6. 영어 읽기 및 작문 관련 강좌
  7. 계절학기에 실시하는 강좌
  8. 캐스톤디자인 및 독립심화 교과목
  9. 국제캠퍼스 연구연수활동 강좌
  10. 기타 교무처장이 지정한 강좌
- ② 전체영어강좌 수업보조금은 학기별로 지급하되, 이론 강좌와 공학인증 관련 전공

설계강좌는 1학점(주당 1시간), 실험/실습 및 실기강좌는 1학점(주당 2시간) 대하여 20만원을 지급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강좌는 10만원을 지급한다.

1. 동일한 강좌를 다수 진행하는 경우 1개 강좌를 제외한 분반강좌
  2. 온라인강좌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과대학장은 전체영어강좌 수업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, 제2항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.
- ④ 전체영어강좌의 수업보조금은 다음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.
1. 학기말에 해당 교강사는 포털에서 전체영어강좌 결과보고서를 입력
  3. 행정실에서는 결과보고서 입력 여부를 확인하고 전체영어강좌 수업보조금을 지급

제6조(기타)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았거나 적용상의 해석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교무처장이 따로 정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시행세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기존 「외국어강좌 운영지침」은 폐지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시행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시행세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지침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지침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지침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